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8.01.05

개정: 2024.12.11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계약재산, 투자일임계약재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제공받는 보수
 - 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다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 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③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고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2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 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- ④ 투자자문서비스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의2, 동법시행령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7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수수료부과 절차)

- ①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집합투자업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협의를 거친다.
- ④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0 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 계약서 및 투자일임 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명의무)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고지)

회사는 법 제9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한다.)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공시 등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 부 칙 >

- 1. 이 기준은 2018.01.05일 부터 시행한다.

< 부 칙 >

- 1. 이 기준은 2024.12.11일 부터 시행한다.